

## 세무 대리인에 대한 불만 제기:

고용한 세무 대리인이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조윤리국(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에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법조윤리국 웹사이트([www.tax.ny.gov](http://www.tax.ny.gov))를 방문하세요(검색: Complaint)
- 518-457-5181로 전화하세요

온라인 또는 518-457-0578로 전화하여 탈세 및 사기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조세부(Tax Department)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간주하고, 제기된 모든 불만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 법조윤리국

저희는 세무 대리인들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협회, 소비자 보호 단체 및 법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세무 대리인들이 윤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본분을 다하도록 보장합니다.

뉴욕주는 세무 대리 업계를 규제하는 7개의 주 중 하나입니다.

## 이니셔티브:

- 모든 비면세 세무 대리인은 뉴욕주 조세부(New York State Tax Department)에 등록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세무 대리인을 고용할 때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지원합니다
- 규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세무 대리인을 파악해서 징계합니다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 소비자 권리 장전

세무 대리인 관련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www.tax.ny.gov](http://www.tax.ny.gov)



##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납세자의 권리 이해

대부분의 세무 대리인들은 법을 준수하며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세무 대리인을 고용할 때 납세자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18-457-5181**로 전화하세요.

뉴욕주 납세자로서 추가 권리를 포함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이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정보는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벵골어, 이디시어, 아이티 프랑스어, 한국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및 폴란드어로도 제공됩니다. (검색: *language*).



## 세무 대리인 의무사항:

- 뉴욕주 세무 대리인 등록증 및 가격표를 게시할 것
- 추후 납세자의 세금 신고가 감사 대상이 될 경우, 납세자를 대리할 지 여부를 납세자에게 미리 알릴 것
- 정확하게 세금 신고서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납세자의 소득, 비용, 가족 및 기타 정보나 문서를 납세자에게 요청할 것
- 납세자가 작성된 세금 신고서(납세자의 은행 계좌 정보 포함)에 서명하기 전에 이를 검토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할 것.
- 납세자가 환급액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자동 이체 받는 대신에 환급예상대출 (Refund Anticipation Loan, 선불 환급) 또는 환급예상수표(Refund Anticipation Check, 환급 이체)를 선택할 경우, 납세자에게 부과될 모든 이자와 수수료에 대해 서면 명세서를 제공할 것
-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에 서명하고 세무 대리인 세무식별번호(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PTIN) 및 뉴욕 세무 대리인 식별번호(New York Tax Preparer Identification Number, NYTPRIN)를 기입할 것(해당되는 경우)
-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를 전자파일로 제출할 것
-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신고서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연중 유효한 주소 및 전화번호를 납세자에게 제공할 것
- 제출된 세금 신고서 사본을 대리한 납세자에게 제공할 것

## 세무 대리인은 다음 문서에 대해 납세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작성되지 않은 세금 신고서
- 불완전한 세금 신고서
- 허위 정보가 기재된 세금 신고서
- 납세자가 이해할 수 없는 정보가 기재된 세금 신고서

## 세무 대리인은 납세자의 뉴욕 신고서를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것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다음 사항을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받을 것임 또는
- 납세자가 국세청(IRS) 또는 뉴욕주 조세부(New York State Tax Department)의 감사를 받지 않을 것임

